

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3의2] <개정 2019. 10. 31.>

재산피해 보험금액(제53조제2항제4호 관련)

보 험 금 액	적 용 대 상
1. 1억원	법 제5조에 따른 용기·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
2. 3억원	1.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·고압가스충전허가 또는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 2.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신고 또는 냉동제조신고를 한 자 3.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또는 고압가스판매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 4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
3. 50억원	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